

# 이비인후과 영역의 검사 및 처치의 요양기준

이길진이비인후과의원  
이길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는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으나 보험 출범시 워낙 낮게 책정된 까닭에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더구나 이비인후과의 단순처치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특과로서의 혜택은 오직 요양급여기준에 수록된 검사 및 처치료의 적절한 활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 에 서면질의 또는 전화로 문의하고 심사상 삭감조정된 부분을 재청구하여 알게된 외래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몇가지의 검사와 처치의 요양기준을 요약해 볼까 한다.

편의상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그러나 이는 현재 연합회 심사과의 내규일

뿐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의료보험 시작후 그들이 행하는 내규가 자신들의 이익쪽으로 항상 변해왔기 때문이다.

입원수술을 하지않고 있는 많은 개원의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수록된 검사 및 처치료를 유효 활용하므로써 불이익을 없애고 부당청구라는 명목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 |             |         |      |
|-------------|---------|------|
| 1) 이관통기법    | 자-566   | } 처치 |
| 2) 고실세척     | 자-563   |      |
| 3) 고실천자     | 자-561   |      |
| 4) 부비강세척    | 자-108   |      |
| 5) 프로엣트 치환술 | 자-108-1 |      |
| 6) 비출혈 지혈법  | 자-99    |      |

그 이외의 ENT "자"항은 수술

<처 치 료>	주 회 수	치료기간중 회 수	양측인정	참 고 사 항
이 개 혈 종 배 액 술	2	2	○	
고 실 천 자	2	2	○	
고 실 세 척	2	수회	○	급성중이염에서는 불인정
이 관 통 기 법	2	2	○	
비 출 혈 지 혈 법	2	2	○	
비 감 개 소 작 술	1	2	○	
부 비 강 세 척	2	수회	○	
인 후 두 소 작 술	2	2		만성인두염에 인정됨 급성인 경우는 불인정

## <검 사 료>

순 음 청 력 검 사	1	1		
자 기 청 력 검 사	1	1~2		
임피던스오디오메트리	1	1~2		고막천공, 화농성중이염에서는 불인정

## <물 리 치 료>

네 브 라 이 저				사-2에 적용 후두염, 만성인두염에
-----------	--	--	--	------------------------

치료기간 4일째 부터는 주2회가 인정됨.